

서울 행정 법 원

제 2 행정 부

결 정

사 건 2022아10960 집행정지
신 청 인 김재영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261번길 8 (산동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2. 3. 25. 신청인에게 한 집회금지 통보 처분은 [별지] 기재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2구합61267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법원 2022구합61267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지] 기재 '집회 허용 범위'에 한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5.

재판장 판사 신명희



 판사 곽동준



 판사 이소진



[별지]

집회 허용 범위

1. 집회 일시

2022. 3. 26. 09:00 ~ 19:00

2. 집회 장소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로 한정함(다만 집회에 차량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그 차량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인도와 연접한 1개 차로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집회 참석인원

질서유지인 등 주최자(주관자) 측 포함 총 299명 이내로 한정함.

4. 집회 조건

가. 경찰이나 피신청인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이나 신청인이 준비한 구별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가 명백히 분리·구획되어야 하고, 집회 참석자들은 간격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집회에 참석하여야 함.

나. 집회 주최자(주관자)는 집회 장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테이블(비접촉체온계 또는 화상체온측정기)을 설치하여야 함.

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 장소 입구에 설치된 검사 테이블에서 비접촉체온계 또는 화상체온측정기를 이용하여 체온 측정을 하여야 하고, 섭씨 37.4도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을 허용해야 함.

라. 집회 주최자 측 및 연설자를 포함하여 집회 참석자는 모두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집회 참석을 허용해서는 안 됨(집회 참석자는 취식 및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됨).

마. 집회 장소 내에서 집회 참석자들은 화장실 용무 등 특별한 상황 외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집회 장소 및 그 주변 인도 등에 신고된 장비 이외의 적치물 비치나 인도 점용은 불가함.

사. 확성기, 앰프 등 음향장비에 의한 집회 소음의 최고 한도는 85데시벨(일몰 전), 80데시벨(일몰 후)로 하되, 1시간 동안 3회 이상 소음 최고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당일 개최된 집회 종료 시까지 일체의 음향장비 사용을 중지해야 함.

아. 집회 주최자와 집회 참석자들은 위 허용된 구간 이외에는 집회 장소에서 이탈하여 행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진 시 각자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집회참석자가 아닌 일반 보행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하여야 함.

자. 집회 주최자와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 시간 및 그 전후로 위와 같은 집회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 및 피신청인의 관련 조치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끝.

정본입니다.

2022. 3. 25.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이석원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